

8. 루마니아(Romania)

1. 근거법 제정 시기

- 최초법 : 1912년
- 현행법 : 2004년(강제개인계좌); 2000년(공적연금제도, 2001년 시행) 2015년(재정법)

2. 제도형태

- 사회보험제도와 개인계좌제도

3. 적용대상

- 사회보험
 - 당연적용 : 개별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; 공무원; 실업급여 수급자; 평균 1,900 lei 이상의 월순소득이 있는 자영자; 기타 특정 근로자
 - 임의적용 : 가능
 - 적용제외 : 평균 1,900 lei 미만의 월순소득이 있는 자영자
 - 특별제도 : 변호사, 공증인, 성직자, 군인과 같은 특정 전문직
- 강제개인계좌
 - 당연적용 : 2008년 1월 1일 기준, 35세 미만의 근로자 및 자영자
 - 임의적용 : 2008년 1월 1일 기준, 35세~45세인 근로자 및 자영자

4. 재원조달

- 가입자
 - 사회보험 : 총 소득의 25%(사회보험만 적용); 총소득의 21.25%(사회보험과 개인계좌 함께 적용할 경우)
 - 보험료 부과 월소득 상한액 : 20,810 lei(실업급여 수급자에만 한정)
 - 개인계좌 : 총 소득의 3.75%(관리수수료 포함)
 - 보험료 부과 월소득 상한액 : 20,810 lei(실업급여 수급자에만 한정)
- 자영자
 - 사회보험 : 소득의 25%(사회보험만 적용); 총소득의 21.25%(사회보험과 개인계좌 함께 적용할 경우)
 - 보험료 부과 월소득 하한액 : 국가 월최저임금(1,900 lei)
 - 보험료 부과 월소득 상한액 없음
 - 개인계좌 : 총 소득의 3.75%(관리수수료 포함)
 - 보험료 부과 월소득 상한액 없음

○ 사용자

- 사회보험 : 힘든 조건에 일하는 근로자를 위해서는 총소득의 4%; 매우 힘든 조건에서 일하는 근로자를 위해서는 8%; 다른 형태인 경우에는 부담금 없음
 - 보험료 부과 월소득 상한액 없음
- 개인계좌 : 없음

○ 정부

- 사회보험 : 결손액 보전
- 개인계좌 : 없음

5. 급여종류별 수급요건

○ 노령연금(사회보험 및 강제개인계좌)

- 보험료 납부기간 15년
- 65세(남자), 60세 9개월(여성, 2030년까지 점증하여 63세)
- 완전노령연금 : 보험료 납부기간 35년(남성), 30년 9개월(여성, 2030년까지 점증하여 35년)
- 힘들거나 매우 힘든 직종 종사자, 특정 유형의 장애인에게는 낮은 수급연령 조건 적용
- 사회보험급여를 받는 기간 및 대학 생활 기간, 군복무기간, 특정기간은 가입기간으로 인정될 수 있음
- 조기연금 : 가입자의 보험료 납부 횟수가 완전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 납부 횟수를 8년 이상 초과한 경우, 정상 퇴직 연령 5년 전까지 지급 가능
- 부분조기연금 : 가입자의 보험료 납부 횟수가 완전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 납부 횟수를 8년 미만으로 초과한 경우, 정상 퇴직 연령 5년 전까지 지급 가능
- 노령연금 해외 지급 가능

○ 장애연금

- 장애연금 (사회보험)
 - 사고(산재 포함)나 질병(직업병 포함)으로 인해 근로능력을 50% 이상 상실한 자
 - 장애 1급 : 모든 근로능력을 상실하고 상시 간호 필요
 - 장애 2급 : 모든 근로능력을 상실하나 상시 간호 불필요
 - 장애 3급 : 통상적인 근로능력 상실
 - 학생과 견습생은 근로로 인한 장애발생의 경우에만 적용
 - 보험료 납부 조건은 장애가 발생한 가입자의 연령에 따라 다양함

- 장애가 산재나 직업병, 종양, 조현병, HIV/AIDS, 군복무로 인한 경우 보험료 납부 조건 무시
- 상시간호보총금 : 장애 1급으로 판정된 경우 지급
- 장애연금 (강제개인계좌)
 - 영구적 장애와 어떤 형태의 근로도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시 지급
- 유족연금
 - 유족연금 (사회보험)
 - 가입자가 사망 당시 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하였거나 연금수급자이었던 경우
 - 수급권자
 - 정상 퇴직 연령에 도달하고 사망 당시 15년 이상 혼인기간이 있는 유족 배우자
 - 유족배우자가 장애가 있고 사망 전 1년 이상 혼인기간이 있거나 / 사망이 산재나 직업병으로 발생하거나(소득조사 실시) / 또는 7세 이하 피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연령 조건 무시(소득조사 실시)
 - 16세 이하의 자녀(학업기간에 따라 학생의 경우 26세까지이며, 장애인은 제한 조건 없음)
 - 유족연금은 양자 협정에 따라 국외 지급 가능
 - 유족연금(강제개인계좌)
 - 가입자가 개인계좌로부터의 급여 수급 전 사망한 경우 지급
 - 장제비(사회보험)
 - 가입자 또는 가입자의 부양가족 사망 시 지급
 - 급여는 수급요건을 충족한 유족, 사망자의 법적 상속인 또는 장례비용을 부담한 자에게 지급

6. 급여종류별 지급액

- 노령연금
 - 노령연금(사회보험)
 - 월연금액 : 평생 축적된 평균 연금점수 × 퇴직당시 연금점수가치
 - 평생 축적 평균 연금점수는 완전연금에 필요한 납부기간 연수로 가입자의 총연금점수를 나누어 산정됨
 - 당해 연도 연금점수는 가입자의 월평균임금액을 국민월평균임금액으로 나누어 산출
 - 연금점수가치는 1,100 lei임
 - 국민월평균임금액은 4,162 lei임
 - 근로는 지속 가능

- 조기연금 : 노령연금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되나, 보험료 납부인정 기간은 조기연금 산정 시 고려되지 않음
- 부분조기연금 : 보험료 납부기간에 따르되, 정상 퇴직 연령 이전 청구된 매월에 대해서 감액 적용
 - 완전연금에 필요한 납부기간을 1년 미만 초과하는 납부기간이 있는 경우 매월에 대해 0.5% 감액
 - 1년 이상 2년 미만 초과하는 경우 0.45%; 2년 이상 3년 미만 초과하는 경우 0.4%; 3년 이상 4년 미만 초과하는 경우 0.35%; 4년 이상 5년 미만 초과하는 경우 0.3%; 5년 이상 6년 미만인 경우 0.25%; 6년 이상 7년 미만은 0.2%; 7년 이상 8년 미만은 0.15%
 - 보험료 납부인정 기간은 조기연금산정 시 고려되지 않음
- 월 최저연금액 : 640 lei
- 연금액 조정 : 물가지수 변동 100% 및 평균임금 실질 성장 50%에 기초하여 매년 조정되는 연금점수가치의 변동에 따라 매년 조정됨
- 노령연금(강제개인계좌)
 - 계좌 적립액을 일시금으로 지급
 - 적립액이 규정된 월 최저액 이상의 연금월액을 지급하기에 충분한 경우, 최대 5년 동안 한정된 연금 형태로 지급 가능

○ 장애연금

- 장애연금(사회보험)
 - 연금액 : 평생 축적된 평균 연금점수 × 청구 당시 연금점수가치
 - 평생 축적 평균 연금점수는 완전연금에 필요한 납부기간 연수로 가입자의 총연금점수를 나누어 산정됨
 - 당해 연도 연금점수는 가입자의 월평균임금액을 국민월평균임금액으로 나누어 산출
 - 장애 1, 2급에 대해서는 미납된 납부에 대해 추가적인 인정이 주어질 수 있음
 - 연금점수가치는 1,100 lei임
 - 국민월평균임금액은 4,162 lei임
 - 상시 간병보충금 : 연금점수가치의 80%를 일시금으로 지급
 - 정상 수급연령에 도달할 경우 장애연금은 정지되고 사회보험 노령연금으로 대체됨
 - 월 최저 장애연금액 : 640 lei
 - 연금액 조정 : 물가지수 변동 100% 및 평균임금 실질 성장 50%에 기초하여 매년 조정되는 연금점수가치의 변동에 따라 매년 조정됨
- 장애연금(강제개인계좌)
 - 계좌 적립액을 일시금으로 지급

- 적립액이 어떤 월 최저액 이상의 연금월액을 지급하기에 충분한 경우, 최대 5년 동안 한정된 연금 형태로 지급 가능

○ 유족연금

• 유족연금(사회보험)

- 유족이 1명 : 사망자가 수급했거나 수급자격이 있던 노령연금 또는 장애연금의 50%
- 유족이 2명인 경우: 75%; 3명 이상인 경우 100%
-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배우자가 저소득 비가입자인 경우 6개월간 연금 지급
- 사망자가 노령연금 수급자격이 없었거나 장애연금, 조기노령연금 또는 부분 조기노령연금 수급자이었다면, 유족연금은 장애1급에 대한 연금에 기초함
- 유족이 자신의 권리로 노령연금 수급자격이 된다면, 두 급여 중 많은 연금이 지급됨
- 완전고아의 경우 부모 모두 가입자이었다면 두 연금 수급
- 월 최저 유족연금액 : 640 lei
- 연금액 조정 : 물가지수 변동 100% 및 평균임금 실질 성장 50%에 기초하여 매년 조정되는 연금점수가치의 변동에 따라 매년 조정됨

• 유족연금(강제개인계좌)

- 가입자의 적립된 자산의 가치는 수급자격이 있는 유족의 개인계좌로 나누어 이전됨
- 유족이 개인계좌제도의 가입자가 아닌 경우, 적립된 자산은 일시금이나 최대 5년 동안 고정 연금으로 지급

• 장제비(사회보험)

- 가입자의 장례에 대해 일시금으로 4,162 lei 지급
- 부양가족의 사망 시 장제비는 50%로 감액됨

7. 관리운영기관

○ 노동사회정의부(Ministry of Labor and Social Justice)

- <http://www.mmuncii.ro>
- 사회보험제도에 대한 전반적 감독 및 정책개발

○ 공적연금국가기구(National House of Public Pensions)

- <https://www.cnpp.ro>
- 사회보험제도 운영

○ 금융감독청(Financial Supervisory Authority)

- <https://asfromania.or>
- 사적연금기금 운영자에 대한 규제와 감독

○ 사적연금기금 운영자

- 개인계좌 관리 및 연금 지급

<2018년 ISSA 자료>